

수요물자(기술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

선거연수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선거연수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사업문의: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 이다슬 주무관 (☎ 031-210-1534)
 - 계약문의: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 신경화 주무관 (☎ 031-210-1522)

1. 입찰개요

사 업 명	2026년도 선거연수원 내진성능평가 용역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공조달 분류명	안전진단용역
사업금액	금11,8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금10,74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 불가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
분할납품	불가
검사/검수기관	수요부서/수요부서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규격, 제안서 주요내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3.(목)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0.(목) 10:00**
- 개찰(입찰)일시: **2026. 9. 10.(목) 11:00**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격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구조)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기술사(내진설계 분야 책임기술자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 또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 되는 사업입니다.
- 해당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에 필요한 서류
 - 개찰결과 우선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격심사 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②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③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 등록 증명서류
- ④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의 보유 증명서류(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⑤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 면허증 사본[교육이수증(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 이수사항 포함)]
- ⑥ 건설부문(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면허증 사본(해당자)
- ⑦ 건설부문(구조)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해당자)
- ⑧ 수행능력 평가 자료(신인도 포함)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본 영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영역으로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책임 보험보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부서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①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①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낙찰하한율) 결정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항 [별표1]의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항 [별표1]의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 낙찰하한율: **89.7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의사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적격심사 시스템으로만 통지하며(개별 전화 연락x), 문서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 순위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선거연수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선거연수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감사2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 참여마당 → 사이버감사관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7) 일할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②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④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⑤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입찰 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 (조달청 지침)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